

넓고 오래된 상속세제의 합리적 개편

(세제실, 재산세제과, 이원준 사무관, 044-215-4311)

I. 추진 배경

- 20년 이상 넓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, 중산층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
 - 상속세 공제는 '97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, 그간 물가·주택 가격 상승*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**
 - * '97년 대비 물가는 2배, 주택가격은 2.2배 상승
 - ** 과세자 비율(과세자/전체 피상속인): ('97) 1.0% → ('23) 6.8% [약 7배 ↑]
(서울은 '07년 2.2% → '23년 15.0%)
 -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(26.1%)의 약 2배 수준이며,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외국 대비 높은 수준

II. 정책 내용

-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천만원 → 5억원으로 상향 조정
 - 피상속인의 자녀가 1인일 경우 7억원 공제(기초 2억원+자녀 5억원)
자녀가 2인일 경우 12억원 공제(기초 2억원+자녀 10억원)
- 기업승계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(현행 50% → 40%)하고 최저 과세표준 구간 조정(현행 1억원→2억원)

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-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
 -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공제 금액이 커지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다 자녀가구를 지원하고, 출산율**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* [혼인(만건)] ('10) 32.6 ('15) 30.3 ('20) 21.4 ('23) 19.4 ['10년 대비 △40.5%]
[출생아(만명)] 47.0 43.8 27.2 23.0 ['10년 대비 △51.0%]
- 기업의 지속성장과 투자 및 고용의 유지·창출을 지원하고, 자본유출을 방지하여 과도한 상속세가 역동경제 구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정